

【별표 4】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고시금액 이상

구분	평가항 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일반 부분 (2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8	정량 평가
		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 년간 사업수행실적	8	
		사회적책임	임금채불	-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0	
	서식 1 ~ 서식 5 중 해당 분야 평가항목 활용			80	정성 평가
	소 계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80%)			※ 100점 만점을 80점 만점으로 환산	80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20%)			※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20	
합 계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100	

※ 총 평가점수(100) = 기술제안(입찰)서 평가(80) + 가격제안(입찰)서 평가(20)

가. 기술제안(입찰)서 세부 평가기준

1) 정량제안서 평가

가) 정량제안서 평가의 비율은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의 20%로 합니다.

나) “갑”의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정량적 평가분야 평점산식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한도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8	20
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8	
사회적 책임	① 임금채불	△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0	

(1) 경영상태 평가기준(8점)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8점)
- (가)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한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나) 평가 기준
- ① 수행 실적 합산금액(8점)

구분	100% 이상	70% 이상~100% 미만	40% 이상~70% 미만	40% 미만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주]

1.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주요 사업 실적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주2.]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4.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4점)

(가)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나)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마)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바)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정성제안서 평가

가) 정성제안서 평가의 비율은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의 80%로 합니다.

나) 정성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다) 정성제안서 평가에 대한 기준은 “갑”의 방침결정 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 라)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사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합니다.
- 바)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서의 내용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사) 원본 제안서는 제안서가 완전한지, 수치상의 오류가 있는지, 제안사의 대표에 의해 법인 인감 날인이 되어있는지 등을 제출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나.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 1) 가격제안(입찰)서 평가의 비율은 20%로 합니다.
- 2)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가점수} = \text{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 입찰가격}}{\text{해당 입찰가격}} \right)$$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가점수} = \left[\text{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 입찰가격}}{\text{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right) \right] + \left[2 \times \left(\frac{\text{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text{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text{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right)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제안서 평가기준

- 1)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갑”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서의 내용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2) 제안서 평가는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3)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제안(입찰)서 80%, 가격제안(입찰)서 20% 비중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 4)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부여하고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5) 원본 제안서는 제안서가 완전한지, 수치상의 오류가 있는지, 회사의 대표에 의해 법인 인감 날인이 되어있는지 등을 제출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6)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

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7)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8) 제안서 평가에 대한 기준은 “갑”의 방침결정 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 9)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사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0)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라. 협상 및 업체선정

- 1) “갑”은 기술제안(입찰)서, 가격제안(입찰)서를 종합 평가하여 협상대상자 중 1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게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며,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합니다.)
- 2)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복수인 경우 기술제안(입찰)서 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며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합니다.
- 3) 제안사의 기술제안(입찰)서와 가격제안(입찰)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제안사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4) 본 입찰의 제안 평가는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하여 “갑”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반영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고시금액 미만

구분	평가항 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일반 부문 (2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16	정량 평가	
		사회적책임	임금체불	-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0		
	서식 1 ~ 서식 5 중 해당 분야 평가항목 활용				80	정성 평가
	소 계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80%)			※ 100점 만점을 80점 만점으로 환산	80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20%)			※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20		
합 계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100		

※ 총 평가점수(100) = 기술제안(입찰)서 평가(80) + 가격제안(입찰)서 평가(20)

가. 기술제안(입찰)서 세부 평가기준

1) 정량제안서 평가

가) 정량제안서 평가의 비율은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의 20%로 합니다.

나) “갑”의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정량적 평가분야 평점산식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한도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16	20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0	

(1) 경영상태 평가기준(16점)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4점)

- (가)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 (나)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다)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마)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바)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정성제안서 평가

- 가) 정성제안서 평가의 비율은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의 80%로 합니다.
- 나) 정성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 다) 정성제안서 평가에 대한 기준은 “갑”의 방침결정 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 라)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사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합니다.
- 바)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서의 내용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사) 원본 제안서는 제안서가 완전한지, 수치상의 오류가 있는지, 제안사의 대표에 의해 법인 인감 날인이 되어있는지 등을 제출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나.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 1) 가격제안(입찰)서 평가의 비율은 20%로 합니다.
- 2)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가점수} = \text{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 입찰가격}}{\text{해당 입찰가격}} \right)$
--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가점수} = \left[\text{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 입찰가격}}{\text{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right) \right] + \left[2 \times \left(\frac{\text{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text{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text{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right)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제안서 평가기준

- 1)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갑”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서의 내용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2) 제안서 평가는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3)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제안(입찰)서 80%, 가격제안(입찰)서 20% 비중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 4)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부여하고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5) 원본 제안서는 제안서가 완전한지, 수치상의 오류가 있는지, 회사의 대표에 의해 법인 인감날인이 되어있는지 등을 제출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6)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와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7)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8) 제안서 평가에 대한 기준은 “갑”의 방침결정 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 9)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사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0)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라. 협상 및 업체선정

- 1) “갑”은 기술제안(입찰)서, 가격제안(입찰)서를 종합 평가하여 협상대상자 중 1순위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게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며,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합니다.)
- 2)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복수인 경우 기술제안(입찰)서 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며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제안(입찰)서 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합니다.

- 3) 제안사의 기술제안(입찰)서와 가격제안(입찰)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제안사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4) 본 입찰의 제안 평가는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하여 “갑”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반영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